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과 이를 원용한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구*

박 은 옥**

-
- I. 서 론
 - II. 근본적 계약위반 관련규정의 해석
 - III. 판례분석
 - IV. 결 론
-

주제어 : CISG, 근본적 계약위반, 계약해제권, 대체물인도청구권, 구제제도

I. 서 론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WTO를 중심으로 시장개방과 비차별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활발한 무역활동이 그 중심이 되어왔으며 더 나아가 FTA의 확대와 시장의 단일화로 인하여 이제는 정치적 국경은 존재하여도 경제적 국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세계경쟁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890).

**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ion of Arbitration Law & Practice, SJD Candidate at the Dickinson School of law,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Mail : juliejuly@empas.com

이렇듯, 세계 각국들은 자유무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무역 거래의 걸림돌이 되었던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법제도와 상관습, 그리고 규칙들의 통일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각 나라들은 서로 상이한 법규를 통일화 하여 그 법규들 간의 충돌을 제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이의 가장 성공적인 예는 국제연합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하 'CISG'라 한다))이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와 관련한 각국의 서로 다른 법체계를 조화시키려고 했던 국제적 노력의 산물로, 주요 무역 강대국을 포함하여 현재 70여개 이상의 나라들이 가입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CISG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따른 모든 법적 문제를 규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계약의 이행, 그리고 계약위반 시 그 구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듯 50여년에 걸쳐 완성된 CISG는 총 4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제3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들로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에 관한 규정 뿐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시 상대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CISG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기본 의무로는 물품의 인도 의무, 서류의 인도 의무,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데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더불어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의무나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또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상응하여 CISG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인도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도인에게 주어지는 구제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CISG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주어진 구제 권리들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먼저 충족시켜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전제 조건들은 각각의 조항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고 묵시적으로 조항 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유추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근본적 계약위반이다. CISG는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이에 상응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주어진 구제 권리들을 행사함에 있어 먼저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이 근본적 계약위반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어진 구제 권리들 중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일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구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 계약위반이 구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인 것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주어진 구제 권리들 중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을 그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제 권리는 계약의 해제이다. 이와 더불어 매수인의 구제 권리들 중에서 대체품 청구권 또한 물품의 계약 부적합성이 근본적 계약위반일 경우에만 행사 가능한 권리이다. 이렇게 근본적 계약위반을 그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구제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근본적 계약위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CISG 제25조 규정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 실무에서의 근본적 계약위반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동 조항의 해석과 원용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¹⁾ 특히 동 조항을 매도인의 근본적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과 대체품 인도청구권을 중심으로 최근의 판례들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1) CISG 제25조의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첫째, 근본적 계약위반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문제와 각국의 유사한 입법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조항의 실무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에 대한 고찰”, (하강현,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이 있다. 둘째, 근본적 계약위반의 개념을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고찰하여 그 의미를 정립하고자 한 “비엔나협약상 본질적 계약위반과 계약해제”, (김범철, 국제거래법연구 제6집, 국제거래법학회, 1997)의 논문과 계약위반의 유형 및 그 효과를 분석한 “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의 근본적 위반의 효과와 문제점”, (오원석, 국제상학 제11권, 한국국제상학회, 199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석광현,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논문들이 있다. 셋째, 근본적 계약위반을 매도인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하여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품질불일치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로 나누어 근본적 계약위반의 개념에 대해 논의를 한 “근본적 계약위반 조항의 적용 사례에 관한 고찰 : 매도인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하강현,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와 “CISG상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하강현, 국제거래법연구 제21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의 논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계약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용사례를 분석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홍성규,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의 논문이 있다.

II. 근본적 계약위반 관련규정 분석

1. 일반

CISG 상 계약위반은 동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의 위반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매매계약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²⁾ 동 협약에서는 의무의 종류를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로 구분하지 않고 ‘계약과 동 협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의무의 위반인 계약위반이 근본적인지와 아닌지 만을 구분하고 있다.³⁾ 이는 동 협약 제25조의 규정을 보면 더 확연해 지는데 제25조에서는 계약의 근본적 위반, 즉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들 의무의 근본적인 위반(fundamental breach of obligation)에 대해서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를 근본적 계약위반’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본적 계약위반과 비근본적 계약위반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CISG에서 근본적 계약위반과 비근본적 계약위반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두 개념을 별개의 의미로 취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약위반자의 계약 위반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협약 제2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계약위반의 정도가 근본적 계약위반인지 비근본적 계약위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러한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제25조의 근본적 계약위반조항은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이 근본적인 계약위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CISG 제30조, 제53조.

3)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p. 65.

4) 제25조의 조항을 보면, “A breach of contract is fundamental if...”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의 위반이 근본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요건

1) 기대의 실질적 박탈 정도의 손실

근본적 계약위반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위반의 정도가 동 협약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근본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여야 한다. 동 협약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본적 계약위반에서 근본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얻게 될 기대의 실질적인 박탈을 의미한다. 즉, 계약위반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 당사자가 기대하는 이익의 실질적 박탈의 여부는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지만 이는 객관화된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⁵⁾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익의 실질적 박탈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실제 발생되어질 것이라 기대한 이익의 중요성이다.⁶⁾ 즉, 실질적 박탈을 매수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볼 때 매도인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을 경우 물품의 부적합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 물품과 연관되어 있는 매수인의 또 다른 계약이행에 있어 매수인의 이익 추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매수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근본적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⁷⁾ 따라서 객관화된 개념으로서 매수인의 기대이익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던 개인이 산정한 이익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⁸⁾

2) 예견가능성

근본적 계약위반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예견가능성이다. 즉, 계약위반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동 협약 제25조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5) 김화,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4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9, p. 572.

6) I Schwenzer, P Schlechtriem (ed.), (Eng. trans. by Thoma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2nd ed.)*, Oxford: Clarendon, 2010, p. 368.

7) *Ibid.*, p. 314.

8) F Enderlein and 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N.Y.:Oceana, 1992, p. 142.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는 규정을 덧붙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위반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게 되는 이익의 실질적인 박탈을 계약위반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매수인의 계약상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더라도 근본적 계약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⁹⁾ 이는 계약위반 당사자의 계약위반이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예측할 수 있었던 불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¹⁰⁾ 더 나아가 동 협약에서는 실제로 예측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예측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로 나누어지는데 계약위반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불이익(subjective test)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불이익(objective test)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¹⁾ 즉, 동 협약은 협약 내에 'or'이 아니라 'and'를 사용함으로써 주관적 예측과 객관적 예측 모두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¹²⁾

이렇듯 불이익을 예측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을 하고 있으나 계약위반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예측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불이익을 예측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첫째,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예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¹³⁾ 이러한 주장은 계약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을 예측하고 고려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즉, 계약 체결 당사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당시 각각의 계약 당사자가 예측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다른 주장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계약체결 후의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¹⁴⁾

9) CISG 제25조. 계약해제권과 관련한 근본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CISG 제51조 (2)항, 제64조 (1)항 (a)호, 제72조 (1)항, 제73조에도 언급된다.

10)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0, p. 447.

11) M Wi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 M Bianca & M J Bonell (ed.), Mailand: Giuffre, 1987, p. 216.

12) 석광현, 전제논문, p. 448.

13) J Ziegel, "The Remedial Provisions in the Vienna Sales Convention: Some Common Law Perspectives", N Galston & H Smit (ed.), International Sales, N.Y.: Matthew Bender, 1984, p. 11.

14) H Flechtner,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the Perspective from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계약위반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시기에 예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 후속적으로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즉,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였고 만약에 이러한 장애를 계약위반자가, 그리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었다면 이는 근본적 계약위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⁶⁾

세 번째 주장은 앞서 언급된 두 개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즉,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의 예측시기를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체결 후 제공된 정보나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도 예외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¹⁷⁾ 이 주장은 계약 체결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측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을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우선시한다. 또한 동시에 계약체결 후 일방의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예측하였던 이익과 위험이 변경되는 것을 다른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장을 배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 협약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예측시기의 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판단은 법원의 판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3) 입증책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약의 위반이 근본적 계약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의 실질적인 박탈이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박탈의 예견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이러한 요건들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 협약 제2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기대의 실질적인 박탈의 부분은 계약 위반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계약위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⁸⁾ 즉, 계약체결 후 계약위반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대의 실질적인 박탈을 상대방 당사자가 산정하여 계약의 근본적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제도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며, 이때 상대방 당사자는

Article 2 of the U.C.C.", 8 J.L. & Com. 53, 1988, p. 53; J Ghestin,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ccording to the Vienna Sales Convention of the 11th April 1980,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t'l Bus. L J.5, No.1, 1988, p. 22.

15) H Flechtner, *op. cit.*, p. 75.

16) *Ibid.* p. 75.

17) M Will, *op. cit.*, p. 217.

18) 석광현, 전제논문 p. 449.

기대의 실질적 박탈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 협약 제25조에서 “unles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위반자가 예견 불가능성을 이유로 동 계약위반이 근본적 계약위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주장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증거는 당연히 주장의 주체인 계약위반자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¹⁹⁾

3. 하자보완권과의 관계

CISG는 매도인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 인도기일 전 또는 그 이후라도 매도인에게 동 부적합성을 보완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인도기일 전의 하자보완권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야기하지 않고 인도기일 내에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면 인정되며,²⁰⁾ 인도기일 이후의 보완권은 유사하게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매수인의 선급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 받는데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지체 없이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면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한다.²¹⁾ 여기서 문제는 매도인의 이러한 하자보완권이 근본적 계약위반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먼저 이행기 전 하자보완권과 근본적 계약위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근본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행기 이후의 하자보완권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먼저 긍정설의 견해에 따르면 CISG Art. 48에 따른 하자보완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근본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이 심각한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이 실제로 그 하자를 적법하게 보완하거나, 하자의 보완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그 보완이 기대되는 경우 근본적 계약위반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²⁾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이라도 인도기일

19) 동 협약 제25조는 입증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동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만으로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대의 실질적인 박탈을 입증하기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방 당사자가 더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러한 실질적인 박탈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계약위반 당사자가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입증책임의 현실적인 배분에 적합하다(J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3rd ed.)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 273).

20) CISG Art. 37.

21) CISG Art. 48(1).

22) M Will, *op. cit.*, p. 347; Barry Nicholas,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Law”, 105 L.Q.R. 201, 1989, p. 224; Michael. H. Babiak, “Defining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이 계약의 본질에 해당할 정도의 중요 사항이거나, 하자있는 물품의 제공으로 매도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정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³⁾ 이에 반해 부정설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는 무관하게 앞서 언급한 CISG Art. 25상 근본적 계약위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는 근본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행기 이후의 하자보완권에 관한 CISG Art. 48(1)의 내용상 그 시작문구가 “subject to art. 49”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해제권과 하자보완권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먼저 명시적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권이 우선되어 해석되어야 하므로 CISG Art. 25상 근본적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는 무관하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⁵⁾ 이와 반면에 CISG Art. 48(1)의 규정 문구에도 불구하고 CISG의 계약유지의 이념의 관점에서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이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⁶⁾

III. 판례분석

1. Printed work case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독일에 소재한 출판업자인 매수인과 이탈리아 소재 인쇄업자로 그의 인쇄물 제작을 주로 중국에서 이행하는 매도인간 인쇄물 공급계약에 관한 건이다.²⁷⁾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무역중개인과의 협상 후 그에게 124,104권 분량 가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6 Temple Int’l & Com.L.J. 113, 1992, p. 12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 192; 이병문, “SGA 개정안과 CISG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p. 103; 이병문, “EC Directive상 하자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2, p. 47.

23) I Schwenzer, P Schlechtriem (ed.), *op. cit.*, p. 408.

24) M H. Babiak, *op. cit.*, p. 127; Eric C. Schneider, “The Seller’s right to Cure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7 Ariz. J. Int’l & Comp. L. 69, 1989, p. 84.

25) P 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Deventer: Kluwer, 2000, p. 78.

26) M. Will, *op. cit.*, p. 349.

27) Germany, District Court Köln 88 O 57/11, 29 May 2012.

드북의 인쇄물에 대하여 청약서를 송부하였다. 동 청약은 독일어로 작성이 되어있었으며 그 내용에는 가이드북의 권당 가격은 FOB 가격으로 €0.475, 총액은 €58,949.40이, 그리고 “15.07.2011 FOB commercial fixed date”²⁸⁾, “place of jurisdiction is Cologne, German law applies complimentary”²⁹⁾ 포함되어 있었다. 매수인이 인쇄물의 인도 일자를 고정한 배경은 그가 수퍼마켓 판촉행사와 연계한 인쇄물을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매도인 업체의 대표는 매수인 청약서의 매 페이지 아래 구석에 이름의 첫 글자와 함께 서명을 하여 무역중개인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다.

위 청약과 승낙서의 교환에 따른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은 2011년 5월 30일과 6월 9일 사이에 인쇄형판(printing templates)을 매수인에게 송부하고 그의 수정요청에 따라 필요 부분의 수정과 함께 매수인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다. 이에 매도인은 2011년 6월 13일 견본품을 인도하였고, 매수인은 그의 주문품이 인도기일 내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10일 무역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중국에서의 종이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매도인의 인도지연이 있을 예정이며, 그에 따라 인쇄물의 인도는 2011년 8월 12일 납기를 보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2011년 7월 11일자 서신에 합의된 납기일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고 동 기일의 도과에 따른 책임부분을 언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중국 설비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탈리아에서의 인쇄를 제안하였다. 결국 매도인은 7월 15일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무역중개인은 7월 15일자 서신에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대금지구에 대한 지급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도인 인쇄업체의 대표는 2011년 7월 18일자의 서신에 항공우송편으로 가이드북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매수인의 이탈리아에서의 인쇄 제의에 대하여 이는 이전 주문분에 대한 대금지급의 선행과 이탈리아 인쇄 주문분에 대하여선 매도인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의 개설을 조건으로 함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2011년 7월 18일과 20일자의 서신에 매도인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함을 통지하였다.

한편 매수인은 7월 18일자 서신에 매도인의 납기를 도과한 가이드북 수령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음을 밝힘과 동시에, 문제의 가이드북은 다른 인쇄업체에 주문을 하였음을 알렸으며, 이러한 대체거래를 통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7월 19일자 서신을 통해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며 추가거래를 위한 잔여 모든 청약을 철회함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매

28) 청약서상 독일어 원표기는 “15.07.2011 FOB handelsrechtlicher Fixtermin”.

29) 청약서상 독일어 원표기는 “Gerichtsstand ist Köln. Ergänzend gilt deutsches Recht”.

수인은 2011년 7월 21일 실제로 독일에 소재한 한 인쇄업체에 총액 €166,000 상당의 인쇄주문을 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1,511.80의 비용이 발생되었다. 상기 사실에 기초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쇄물 인도의무 위반으로 인한 대체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대금과 대체거래 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107,050.60을 청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수인은 대체거래에 따른 신용장 개설비용 €1,511.80, 변호사비용 €880.10, 견본품 및 라벨 송부비용 €396.06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이에 맞서 매도인은 2012년 2월 14일자 서신을 통해 매수인이 인쇄형판을 승인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함을 밝혔다.

2) 판결내용

독일소재 쾰른지방법원(District Court of Cologne)은 매도인의 계약상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매수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한편 동 법원은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위반은 CISG상 근본적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동 규정상 근본적 위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근본적 위반은 매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매수인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반이라 할 수 있다.³⁰⁾ 다만 그러한 결과를 매도인이 예견하지 못했고 매도인과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예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본적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³¹⁾

동 법원은 이 사건상 근본적 위반의 존재 여부에 관련하여 FOB조건하의 납기일자인 2011년 7월 15일에 대한 위반은 납기일이 계약상 명백한 핵심 사안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연인도가 매수인의 이해에 완전히 반하는 경우에 한해 근본적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2011년 7월 15일을 인쇄물 인도의 지정기일로 하는데 명시적으로, 그리고 매도인에게는 명백하게 합의된 내용이었으며, 매도인은 “15.07.2011 FOB handelsrechtlicher Fixtermin”[15.07.2011 FOB commercial fixed date]가 기재된 청약서에 서명을 한 바 있다. 또한 매도인이 설령 HGB Sec. 376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매도인의 서명에 의해 승인된 “Fixtermin”[fixed date]의 의미를 오인할 리가 없으며, 납기지정일 조항은 국제인쇄업계에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쾰른지방법원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

30) CISG Art. 25.

31) Id.

다. 본 건에서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아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대체거래 시 손해배상청구권이 허용되지는 않는다.³²⁾ 그러나 매수인의 2011년 7월 18일자 서신에 매도인의 지연인도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음을 표명하고, 이와 더불어 다른 업체에 해당 지연분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졌음을 통보한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매수인으로 하여금 CISG상 손해배상청구 관련 일반조항이라 할 수 있는 CISG 제7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에, 대체거래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매도인이 예견가능 한 범위에 한하여 한다.³³⁾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 매수인이 인쇄물을 그의 고객인 Discounter Aldi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납기일이 지정되어있음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의 지연인도로 매수인은 Aldi사에 높은 계약상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한 대체거래는 짧은 납기로 인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계약가에 비해 약 두 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은 매도인에 예상가능 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퀵법원은 매도인의 위반에 따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³⁴⁾ 동 의무를 매수인이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검토결과 매수인은 2011년 7월 11일자 서신에서 매도인이 달리 납기일을 준수할 수 없다면 중국이 아닌 이탈리아에서의 인쇄를 제안하였고, 매도인은 그의 2011년 7월 18일자 서신에서 중국으로부터 항공우송을 통한 인쇄물 공급을 거절함과 동시에, 매수인의 이탈리아 인쇄제외에 대해 이는 이전 주문분에 대한 대금지급과 현재 주문분에 대하여 매도인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의 개설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퀵 법원은 매도인에 의한 새로운 조건(신용장 개설 조건)하의 이탈리아에서의 인쇄물 공급 제안은 사실상 매수인이 수락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위반이 없음을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퀵지방법원은 매도인의 매수인에 의한 신용장개설 미이행에 따른 주문이행 거절과 관련하여 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은 애시 당초 당사자들 간 합의의 내용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묵시적 합의의 내용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매도인에 의한 때늦은 2011년 7월 15일자 신용장 개설 요청은 사실상 당사자들 간의 합의의 내용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CISG Art. 75.

33) CISG Art. 74.

34) CISG Art. 77.

3) 시사점

이 사건은 매도인의 인쇄물 인도의무 불이행 내지 인도지연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으로, 주요 쟁점은 매수인의 대체거래를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과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 이행여부에 있다. 비록 동 사건의 내용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가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의 판결내용이 근본적 위반에 대한 계약해제권을 자세히 다루지 않아 아쉬움이 남으나, 동 사건의 판결 내용과 관련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근본적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올바른 방향이다. 물론 매수인은 그 청구소송에 있어 계약해제의 의사를 명료히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매수인의 2011년 7월 18일자 및 19일자 서신에 계약종료 의사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대체물의 구매에 나섰음을 명료히 한 사실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은 근본적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전제하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였을 것이다. 매수인에 의한 계약해제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으로부터 이어지는 결과는 인도의무 이행이 없었음에도 매수인이 손해경감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동 의무이행 여부의 판단을 위해 매수인에 의한 대체거래 자체의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물론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보듯 매수인이 이탈리아 인쇄에 의한 대체인도 제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한 또 다른 신용장의 개설을 조건으로 동 제의의 수용의사를 밝혔기에 그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초 계약내용에는 없는 신용장 개설의 요청과, 이전 주문분(중국 인쇄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매도인은 사실상 완전히 별개의 계약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물품의 인도가 없는 경우라면 손해경감의무의 하나로 대체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과 법원은 이 사건을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근본적 계약위반에 기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로 분쟁을 해결하였어야 함이 옳다고 사료된다.

둘째,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매수인의 계약해제는 납기일의 중요성에 기초한 근본적 위반의 판단여부도 있으나, 매수인에 의한 추가기간이행의 지정과 동 기일내 인도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해제도 가능하였다. 앞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지정납기일의 위반이 근본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던 바, 이러한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매수인에 의한 추가기간이행의 지정권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거나 동 기간 내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지연의 근본적 위반여부에 무관하게 계약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³⁶⁾ 그러나 본 사건에서 추가이행기간은 매도인의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그의 고객에게 실제로 인도하여야 할 납기일을 고려하여 본다면, 매도인의 동 기일의 준수를 위해서는 중국이 아닌 이탈리아 현지 인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2. Jumping Horse Case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캐나다 거주 매수인(B)과 덴마크의 마상(馬商)인 매도인(S)간 비월마를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다. 이건에서 매수인은 그녀의 딸(D)이 출전하게 될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경기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국제적인 장애물 비월 경기에 사용할 목적인 말의 구매를 위해 자문인을 통해 매도인을 접촉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데니시 워블러드 6-8마리를 수배한 후 이들을 매수인의 딸과 그의 자문인이 살펴볼 기회를 주었다. 매수인의 딸은 이들 중 경쟁력 있는 경마 기록을 소지한 9세 거세마인 Cator라는 말이 가장 맘에 들었고 이 말을 11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시험 기승 후, 수의사(V1)를 고용하여 덴마크의 한 동물병원에서 Cator의 신체검사를 시행토록 하였다. 수의사(V1)에 의한 검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³⁷⁾

먼저 검사소견상 고위험도를 보이는 주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이상 징후는 오른쪽 앞다리와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비록 그 자체로서 경미한 것

35) CISG Art. 47(1).

36) CISG Art. 49(1)(b).

37) "Risk is defined as the likelihood or probability that illness, physical limitation or unsoundness is present at the time of the examination and likely to affect the horse in its intended use at this time or in the immediate future. [...] There was no major health or soundness issue identified on this examination which suggests a high degree of risk. Most of the abnormalities of concern are associated with the right front limb. Each one of these findings is fairly minor on its own, but because there are several finding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area they have an additive effect in increasing the perceived level of risk. The horse exhibited a slight positive flexion test on the right fore and showed a very slight degree of intermittent right front limb lameness when circling to the left. He also has a very mild radiographic variation in the right front coffin bone. These findings suggest an increased level of risk for right front foot lameness. However, there is no major evidence of weakness or pathology in this area."

들이기는 하나 특정 부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검사결과로 인해 인지된 위험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상가효과가 있다 할 수 있다. Cator 오른쪽 앞다리에 대한 가벼운 굴곡테스트의 결과 좌측방향으로의 회전 시 아주 경미한 정도의 간헐적인 파행(lameness)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오른쪽 발굽뼈에 경미한 방사선검사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검사결과들은 오른쪽 앞다리 파행에 대한 증가된 위험의 정도를 보이는 것이나, 이 부분 병리 내지 질병에 대한 주요 증거는 없다.

상기 검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고 1주일 후 매도인은 Cator를 550,000 유로의 가격에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ator는 2009년 12월 9일 덴마크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Miami로 항공우송 되었다. 2010년 1월 2일 딸(D)은 매도인에게 Cator사 파행을 시작하였고 Cator를 더 이상 승마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딸(D)은 Cator를 2010년 1월 5일 수의사(V2)에 진찰토록 하였고, 수의사(V2)는 오른쪽 앞다리 부상이 사전에 존재하였었을 개연성 있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매도인은 다른 말로 대체를 제안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통한 화해 합의에 실패하여, 2010년 9월 10일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덴마크 법원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매수인의 소송에 덴마크 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Cator의 상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의사(V3)을 수배하여 수의학적인 전문 견해를 제출토록 하였다. 그의 보고서에는 Cator의 인도당시 오른쪽 앞다리에 한 가지 이상의 질환과 정형외과 장애에 취약한 상태였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질환은 계약체결 이전 수의사(V1)에 의한 검사결과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수의사(V1)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읽어 본적이 없었음을 법원의 심리과정 중에 진술하였다. 그리고 매도인은 통상적으로 그러한 상태 하에서 라면 그도 말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많은 승마선수들은 올림픽 경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위험회피 성향이 보다 덜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덴마크 법원은 CISG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매수인에 의한 Cator의 구매목적과 매수인 딸(D)의 수입원이 비록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유일한 직업은 승마, 경마 등 말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동 법원은 매수인의 Cator 구매는 소비자 매매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사건은 덴마크 국내법이 아닌 CISG에 의해 규율됨을 밝혔다.³⁸⁾

38) CISG Art. 2(a).

한편 덴마크 법원은 물품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인도당시의 Cator는 최소한 인도 직 후 바로 관찰된 한 가지 이상의 장애에 취약한 상태였었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비월마로 쓸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매수인은 최고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 출전할 비월마를 구매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인도당시의 Cator는 계약에 부적합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함께 덴마크 법원은 Cator의 계약부적합에 기초한 매수인의 구제제도를 결정함에 있어, 매수인이 동 부적합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았거나 모를 리 없었던 경우, 즉 매도인의 면책사유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³⁹⁾ 이와 관련하여 동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목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첫째, 계약체결 이전 매수인은 Cator가 파행을 겪어본 적이 없으며 어떠한 약물 투여도 없었고, 또한 높은 수준의 비월경기의 비월마로서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통보 받은 사실. 둘째, 수의사(V1)에 의한 검사결과상 Cator의 오른쪽 앞다리에 경미한 결립 내지 파행이 수반된 가벼운 정도의 민감성이 관찰이 되기는 하나, 수의사(V1)는 Cator의 긍정적인 이력을 고려하여 이들 검사결과가 심각하다든지 또는 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Cator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의 정도를 중하 정도로 평가한 사실. 셋째, 법원이 지명한 수의사(V3)는 그의 검사결과 보고서와 증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의사(V1)은 추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며 Cator가 높은 수준의 비월마 경기에 적합지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갖기 전 일정 기간의 관찰이 필요하였었다는 진술. 마지막으로 수의사(V1)에 의한 검사결과는 심각한 지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경미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양립가능한 결론이라는 수의사(V3)의 진술.

상기 사항들을 고려한 덴마크 법원은 매수인(B)이 Cator의 질환 또는 동 질환에 걸리기 쉬운 소인을 알았거나 모를 리 없었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⁴⁰⁾ 또한 동 법원은 매수인에게 계약 부적합성에 대한 구제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Cator는 국제적인 경기에 출전할 목적으로 구매되었다는 사실, Cator는 동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비월마로서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 매수인(B)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을 판결하였다. 따라서 매도인(S)은 매수인(B)에 의한 Cator의 반환 시 원 구매가인 550,000 유로를 반환해야 한다는 매수인의 청구는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39) CISG Art. 35(3).

40) CISG Art. 35(3).

3) 시사점

이 사건은 하자있는 비월마의 인도에 따른 매수인의 계약해제에 관한 건으로, 주요 쟁점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의 계약적합성 인도의무 위반과 매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기한 매도인의 면책여부에 있다. 비록 동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근본적 위반의 해당 여부는 명료한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 위반의 구성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 없이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 사건의 판결 내용과 관련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비월마의 구매에 있어 최고수준의 경기 출전 계획 등을 언급하여 매매의 특정목적은 계약체결 전 명료히 함으로 그 위반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근본적 위반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즉 통상적으로 특정목적은 당사자의 물품구매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바, 특정목적에 반하는 물품의 인도는 대개 근본적 위반에 해당할 것이므로 당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할 수 있다.⁴¹⁾

둘째,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Cator의 상태 하에서 그 자신도 구매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자인함으로 근본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은 명확한 것으로 보여지나, 덴마크 법원은 매도인의 대체마 인도제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관계를 명료히 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즉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과의 관계에 있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지체와 불편 없는 매도인의 하자보완 가능성 등이 근본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대체마의 제의를 하였었던 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한 사실은 문제인 것이다.⁴²⁾

41) 다만 하자의 중대성의 관점에서, 즉 하자있는 물품임에도 그대로 보유 시 손해배상이나 대금감액 등에 의해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하자있는 물품의 재판매가 가능하거나, 동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든지의 경우라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품의 사용목적이 매수인 자신의 직접사용 내지 매수인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하자 물품의 재처분 및 이용가능성은 희박하여 하자의 존재는 그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것이다(김화,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 -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4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pp. 579~581).

42)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근본적 계약위반의 성립여부에 대한 주요 학설의 검토에 관하여, 김화, 전제논문, pp. 579 이하;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p. 17 이하;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p. 191 이하; 김진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49조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통권 제84호, 법무부,

3. Print Machine Case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CIF Qingdao \$954,932 조건의 9가지 컬러 플렉서 라벨 인쇄기 (FBZ4200) 매매에 관한 건이다. 동 거래에서 인쇄기의 보증기간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인쇄기의 목적지 도착 직후 세관의 통관과 매매대금의 납부가 완료되었다. 당사자들은 인쇄기의 설치 후 2005년 6월 15일 인수관점검사를 시행하였고 매수인은 이를 최종 인수하였다. 동 검사 결과보고서에는 “인쇄기의 모든 기능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인수되었으며,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부속서를 참조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⁴³⁾ 동 부속서에는 인쇄기의 다음과 같은 주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기재하고 있었다.⁴⁴⁾ 첫째, 인쇄부의 오버프린트 정확성 및 주형절단부의 검사 미이행. 둘째, 주형절단부의 문제와 다음 기계작동 시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지원하에 매도인에 의해 해결될 필요성. 매도인은 이러한 검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주형절단부의 문제는 부속 블레이드롤러가 도착하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동 검사 후 매수인은 인쇄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통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쇄기의 결함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수차례 협상을 가졌고, 인쇄기의 인수과정 및 보수과정에 대한 기록을 회의록의 형태로 남기고 상호서명을 해두었다. 이에 매도인은 그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기술담당 최고 책임자를 보내 문제해결을 위해 인쇄기의 보수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후 2005년 6월 25일 매수인은 중화인민공화국 T-City 출입국 검역국에 인쇄기의 기술성능 검증을 의뢰하였고, 이틀 후 인쇄기의 설계 및 제조상 결함에 의한 인쇄 정확성과 속도의 문제를 지적한 검사증명서를 수령하였다.⁴⁵⁾ 이에 매수인은 동 검사증명서와 계약서, 회의록 등을

2008, pp. 133 이하.

43) “all the functions of the Machine were checked and accepted, other related issues see the annex notes.”

44)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The problem with the ninth color ink stick; The stability of the auto-overprint system to be observed; The overprint precision of the print unit and mould-cutting unit has not been checked; The irregular wine label underlying die mould-cutting, emission and collecting labels is unsolved; The cold-hot unit film-mulching function is unsettled; and The problem of the locker of the flexo roller of the first print suit.

45) 동 검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Under stable materials, printing ink and favorable environment, the print to print precision is over $\pm 0.1\text{mm}$ (See Photos 1 & 2); 2. The print speed is slower than 175m/min. In summar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acts, we

증거자료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대체물인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중국 중재원에 제기하였고, 매도인이 중재원의 판정이후 60일 이내에 대체물인도에 실패하거나 인도된 대체물이 인수판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해제를 청구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인쇄기 품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해당 인쇄기는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관(China Commodity Inspection Bureau)의 검수필 품목의 하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동 인쇄기가 중국에 도달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될 당시 필요 검사를 필하였다. 둘째, 인수판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2005년 6월 25일 해당 인쇄기를 정히 인수하였고, 이를 설치 및 조정 후 양호하게 작동됨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⁴⁶⁾ 셋째, 매수인 제공 증거자료에 따르면 인쇄기는 인수 후 지속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인쇄기 하자의 원인으로 사용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오작동과 부적합한 자재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⁴⁷⁾ 넷째, 인수판정 결과보고서와 T-City 출입국 검역국의 검사증명서 사이에 상호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즉, 전자에 따르면 인쇄기의 모든 기능에 관련하여 매수인은 이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와 반면에 후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쇄의 정확성과 속도상의 문제를 근거로 인쇄기의 설계 및 제조상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지적이다. 다섯째, T-City 출입국 검역국은 인쇄기의 하자여부를 증명할 법적권한이 없기에 그 검사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검역국의 법적권한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Inspection and Quarantine Supervi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입증하여야 하며, 관련 인쇄기의 증명 또한 동 총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판결내용

매수인의 인도된 인쇄기의 하자에 기한 대체물인도 청구 내지 계약해제 청구와 이에 대한 매도인의 주장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다. 먼저 인수판정보고서 및 그 부속서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동 보고서의 내용상 매

determine that the said problems result from design and/or manufacturing defects.”

- 46) 동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BZ4200 Flexo label printing machine of the 040816 Contract, Machine No. 09122004, arrived safely at the H Ltd. in Shandong. After installation and adjustment, the Machine functions well. All the functions of the Machine were checked and accepted, other related issues see the annex notes.”
- 47) 따라서 매수인이 인쇄기를 적절하게 작동하였는지의 여부, 적절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인쇄물이 매수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매수인 제공 추가 증거에 의해 입증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인이 해당 인쇄기가 양호하게 작동하며 이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간인한 부속서상에 인쇄기의 다수 해결되지 않은 품질하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쇄기 일부 기능은 그 인수에 가장 중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인쇄기가 계약에 부적합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동 부속서상에 기재된 문제들 중, 예를 들어, 인쇄부의 오버프린트 정확성 및 주형절단부의 검사 미이행 부분은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된 품질요건에 관한 계약상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연관된 문제라 할 수 있다.⁴⁸⁾ 또한 부속서상 기재된 문제들은 인쇄기가 양호하게 작동한다는 인수판정보고서의 비객관적인 결론을 실제로 뒤집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들은 인수판정보고서상 서명 전에 인쇄기의 설치와 조정에서 발견된 하자들에 관하여 수차례 미팅을 가졌으며, 매도인은 이들 문제들 중 일부 보완제의를 하였고,⁴⁹⁾ 그 내용은 당사자간 회의록에 기재되고 서명된바 있다.⁵⁰⁾ 이들 사실은 인쇄기에 하자가 없다는 매도인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인쇄기는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관(China Commodity Inspection Bureau)의 검수필 품목의 하나에 해당하며, T-City 출입국 검역국의 검사증명 발행 권한의 부재 및 동 검역국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가 무효라는 매도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법적 근거가 없다. 첫째, 중국 해관총국(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의 수출입품 검역 목적으로 발행되는 기계 및 전기제품 검수필 품목 카달로그상 문제의 인쇄기는 검수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동 카달로그에 따르면 특정 품목이 검사필 품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품질에 있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국 수출입상품검역국 내지 기타 검역조직은 검사 후 적절한 시일 내에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셋째, T-City 출입국 검역국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Inspection and Quarantine Supervi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검역기관의 하나에 해당한다. 이는 T-City 출입국 검역국이 검사증명서의 발행 권한이

48) 동 부속서상 인수판정 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en used with stable raw material, printing ink and favorable print environment, the overprint precision should be "print to print $\pm 0.1\text{mm}$ ", "print to mould-cutting $\pm 0.15\text{mm}$ ", "print speed 175m/min".

49) 이에 매도인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기술담당 최고 책임자와 다른 직원을 보내 인쇄기의 보수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고, 인쇄부의 오버프린트 정확성 및 주형절단부의 문제에 대한 보완은 인쇄기의 인수 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바 있다.

50) 이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1일자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the error of the overprint unit is 0.3-0.5mm, the production yield is 60-70%"; and "when the print speed was over 80m/min, the stability of the Machine declines."

있으며 또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⁵¹⁾ 넷째, 매수인이 T-City 출입국 검역국에 인쇄기 하자에 대한 검사요청은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 즉, 동 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 물품에 설계 또는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손상이 있거나,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검사증명서에 기초하여 매도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관의 의미는 계약체결 당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쇄기 하자의 원인으로 사용과정에 있어 매수인의 부적절한 오작동과 적합하지 않은 자재사용이라는 매도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은 입증책임의 분담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 즉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사실에 반증을 하는 자는 매도인이기에 그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오작동 내지 부적합한 자재사용에 의한 인쇄기의 하자발생 등에 대한 어떠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불리한 결과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재 판정부는 매수인의 인쇄기의 하자에 기한 대체물인도청구 내지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인쇄기의 하자가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통지의무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하였다. 먼저 매수인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18개월간의 보증기간에 매도인에게 수차례 인쇄기의 부적합성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매도인은 수차례 그러한 문제해결을 약속하였고, 기술직원을 파견하여 매수인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인쇄기의 조정 및 보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품질하자의 문제는 끝내 제거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도인의 합리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인쇄기의 품질하자를 보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즉 매수인이 계약상 기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계약상 인쇄기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예들 들어, 겹인쇄의 정확성 및 인쇄 속도 등에 관하여 명시조항을 두고 있기에 매도인이 동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중재 판정부는 매도인은 계약에 부적합한 인쇄기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고 동 위반은 매수인의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근본적 위반에 해당하기에 매도인의 대체물인도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정하

51) 민사소송의 증거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기관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는 보다 높은 증명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

였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체물 제공 기간을 중재판정 후 60일 이내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는 최초 인쇄기가 2005년 3월 1일 발송되어 청다오항에 동년 3월 30일 도착한 점을 고려할 때 60일의 대체물 제공기간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⁵²⁾

한편 매수인의 조건부 계약해제청구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CISG상 계약해제는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여야 할 요건과,⁵³⁾ 당사자간 계약서상 인쇄기 자체의 제조결함 내지 설계 결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적시하면서,⁵⁴⁾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앞서 언급한 매도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사유에 따라 매수인의 계약해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계약상 정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하였다. 또한 동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조건으로 매도인에 의한 대체물인도 불이행 내지 인도된 대체물이 인수판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사실상 대체물인도 내지 계약해제라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의의 호의를 베푸는 것에 해당함을 언급하였다.

3) 시사점

이 사건은 하자있는 인쇄기 인도에 따른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 내지 계약해제 청구에 관한 건으로, 주요 쟁점은 인쇄기의 인도 후 인수판정보고서상의 내용과 그 부속서상의 내용 간 상호 충돌의 문제에 해당한다. 비록 동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근본적 위반의 문제와 그 요건 부분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연계한 심층적인 분석은 결여 하고 있으나, 근본적 위반과 관련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계약서상 매수인에 의한 인수판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서 부속서상에 인쇄기의 인도 후 매수인에 의한 인수판정을 위한 요건으로 인쇄부의 오버프린트 정확성과 인쇄 속도 등을 기재함으로써 이 부분이 계약의 주요 핵심사항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실무 당사자들로 하여금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인수판정의 요건과 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매수인의 인수판정보고서상에 해당 인쇄기의 양호한 작동과 그 인수를 확인함으로써 그

52) 이는 인쇄기가 도착하기까지 총 22일의 영업일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53) CISG Art. 49.

54) Article 17 of the Contract "If the Machine fails to meet the acceptance requirements due to the design or manufacturing defects of the Machine itself, the [Buyer] may request replacement of the Machine or cancel the Contract and ask for damages."

부속서와 연계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가들은 인수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에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근본적 위반의 존재에 대한 판단에 있어 매도인의 하자보완 여부를 주요 요건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즉 중재 판정부는 근본적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매도인이 하자보완에 대한 제안과 기술자 등의 파견에 의해 그 보완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간 점을 들며, 이는 결국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수인이 계약상 기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중재판정은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내지 대체물인도청구권과의 관계에 있어 매도인의 하자보완 사실 내지 그 가능성이 근본적 위반의 구성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설을 따르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논문은 그 연구목적에 따라 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근본적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계약해제권과 대체물인도청구 관련 판례를 고찰하여 보았으며, 각 판례별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에 본 결론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통해 실무가들이 CISG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활용 시, 그들의 영업에 있어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 관련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불분명한 부분은 먼저 근본적 계약위반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대의 실질적 박탈정도의 손실,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의 시기 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의 존재가 근본적 계약위반의 구성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사이에서 어떠한 권리가 우선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계약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서의 작성 시에 위 부분들에 대한 명시조항을 마련하여 추후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인쇄물 인도의무 불이행 사건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의무위반의 경우는 인도지연이 얼마나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상 명

시조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동 사건에서 지정납기일에 대한 중요성이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결국 매수인에 의한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품인도의무 자체의 불이행 내지 인도지연의 경우, 근본적 위반에 대한 확실성이 명료치 않은 경우라면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매수인에 의해 매도인에게 알려진 물품구매의 특정목적은 대개 그 의무의 위반은 바로 근본적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비월마 매매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수인은 매매당시 비월마 구매의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였고, 동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는 대개 근본적 위반을 구성하기 위한 매수인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실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넷째, 당사자간 계약상 물품의 인수판정을 위한 요건의 마련 시 동 내용은 궁극적으로 계약해제 사유의 하나인 근본적 위반의 구성요건이 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인수판정 보고서에 인수확인의 서명 등의 행위는 비록 앞서 인쇄기 사건에서처럼 그 부속서에 하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한다하더라도 그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수확인 의미의 서명 등은 각별한 주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범철, “비엔나협약성 본질적 계약위반과 계약해제”, 국제거래법연구 제6집, 국제거래법학회, 1997.
- 김진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49조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84호, 법무부, 2008.
- 김화, “CISG 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4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9.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0.
- _____,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오원석, “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의 근본적 위반의 효과와 문제점”, 국제상학 제11권, 한국국제상학회, 1996.
- 이병문, “SGA 개정안과 CISG 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 _____, “EC Directive상 하자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2.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 _____, “근본적 계약위반 조항의 적용 사례에 관한 고찰 : 매도인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 _____, “CISG상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1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 Babiak, M. H. “Defining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6 Temple Int’l & Com.L.J. 113, 1992.
- Enderlein, F &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N.Y.:Oceana, 1992.
- Flechtner, H,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the perspective

from Article 2 of the U.C.C.", 8 J.L. & Com. 53, 1988

Ghestin, J,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according to the Vienna Sales Convention of the 11th April 1980,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nt'l Bus. L J.5, No.1, 1988.

Nicholas, B,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Law", 105 L.Q.R. 201, 1989.

Schlechtriem P, *Uniform Sales Law*, Deventer: Kluwer, 2000.

Schneider, E C, "The Seller's right to Cure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7 Ariz. J. Int'l & Comp. L. 69, 1989.

Schwenzer, I, Schlechtriem, P(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2nd ed.)*, Oxford: Clarendon, 2010.

Will, M,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Bianca, C M & Bonell, M J(ed), Mailand: Giuffre, 1987.

Ziegel, J, "The Remedial Provisions in the Vienna Sales Convention: Some Common Law Perspectives", Galston, N & Smit, H(ed.), *International Sales*, N.Y.: Matthew Bender, 1984.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its Application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Requiring Substitute Goods under the CISG

Eun-Ok PARK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vention. When the CISG specifies the remedies for both parties, it requires to divid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om breach of contract. By doing so, it provides different remedies to both part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not. From the point of buyer's view, the buyer has two remedies when there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are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o be fulfilled in order to exercise these two remedies.

Although the CISG provid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s meaning is not clear enough, so 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ase by cas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ecent cases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irst, who determine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and when is the time for determination, second, when is the time for unpredictability of substantial deprivation, and last, who has a burden of proof.

Keywords : the CISG,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the Right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Buyer's Remedy